



의안번호	제 2011 - 20 호
의 결 연 월 일	2011. 10. 24 (제5차 임시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임시회의 개최 경과	1
II. 국정감사 보고	1
1. 개요	1
2. 주요 보고내용	1
III.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개최	2
1. 목적	2
2. 일시·장소 등	2
3. 주제발표	2
IV.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최종 분석	3
1. 개요	3
2. 분석 대상	3
3. 분석의 의의	3
4. 분석 내용	4
V. 전문위원 업무 지원	4
VI.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 준비 상황 보고	4
V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5

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견 제출	5
2. 의견 내용	5



I. 임시회의 개최 경과

- 영화 ‘도가니’ 상영 및 2011년 대법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국민여론이 확산
- 양형위원회 차원에서 기존의 성범죄 양형기준 중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
-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하여 보다 폭넓은 국민의 여론 수렴을 위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관한 위원회의 의사 결정이 필요
- 위원장이 이러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2011. 10. 24. 16:00에 제5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II. 국정감사 보고

1. 개요

- 2011. 10. 5. 10:00(대법원 제401호 대회의실)에 2011년도 국정감사 실시
- 위원장이 직접 ‘201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함

2. 주요 보고내용

- 양형위원회 현황
- 201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 향후 계획

III. 양형자료분석관 워크숍 개최

1. 목적

-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양형자료조사업무의 효율성, 정확성, 통일성 향상
- 분석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습득
- 분석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소속감 제고

2. 일시 · 장소 등

- 일 시 : 2011. 10. 14.(금) ~ 10. 15.(토) 【1박 2일】
- 장 소 : 용인 한화리조트(경기도 용인시 소재)
- 참 석 : 양형자료분석관(15명), 양형자료조사과 직원(2명), 통계분석과 직원(1명)
※ 운영지원단장, 기획운영과장 참관

3. 주제발표

	주 제	발 표 자
1	운영점검의 충실화 방안	박대영
2	운영점검 및 신양형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실무연구	박영민
3	양형기준 마련에서의 양형조사와 통계분석의 역할 및 양형조사 적용방안	선창민
4	운영점검시 기본범죄 결정에 관한 실무 연구	엄홍준
5	운영점검에 관한 분석관의 역할	황재명

IV.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최종 분석

1. 개요

- 전국 법원에서 2010. 1. ~ 2011. 6. 사이에 조사된 4,880건과 2011. 8. 8. ~ 2011. 9. 9. 사이에 조사된 3,218건 등 전체 8,098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최종 분석 결과를 보고
- 조사 기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2011년 양형자료조사는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인 『교통, 폭력, 금융·경제, 지식재산권범죄군』으로 한정

2. 분석 대상

- 2010. 1. ~ 2011. 6. 사이에 조사된 4,880건
- 2011. 8. 8. ~ 2011. 9. 9. 사이에 조사된 3,218건
- 범죄 유형별 현황

범죄군	피고인수(명)	비율(%)
교통범죄	2,773	34.2
폭력범죄	4,087	50.5
금융·경제범죄	796	9.8
지식재산권범죄	442	5.5
합 계	8,098	100.0

3. 분석의 의의

- 양형기준 연구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자료를 제공
 - 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의 범죄유형 세분화, 범죄유형별 기준형량,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 추출, 양형인자별 가중치 등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통계자료 추출

4. 분석 내용

- 별책 「제3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 기재와 같음

V. 전문위원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기획운영과, 통계분석과)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팀별회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제43차 전문위원 전체회의	2011. 10. 17. 16:00	○ 성범죄 양형기준 보완 방안 검토 ○ 제5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VI. 양형에 관한 설문조사 준비 상황 보고

- 2011. 9. 16. 위원회 제36차 전체회의에서 「설문조사 실시계획의 건」 의결
- 2007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의 문항을 참조하여 운영지원단에서 설문 문항 초안 작성 완료
- 모의사례 등을 대폭 추가하였고, 특히 성범죄 관련 양형에 관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설문문항에 성범죄 관련 사례 대폭 포함하여 설문문항 초안 작성
- 2011. 10. 24. ~ 10. 28.경 전문 리서치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예정

Ⅶ.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견 제출

- 2011. 10. 2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건의’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접수됨
- 양형위원회 제5차 임시회의에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논의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임

2. 의견 내용

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감경인자’ 개선 요청

- 현재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범죄에서 ‘자수’, ‘처벌 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감경인자로 보고 있음
- 정부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감경인자들은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부정적 효과가 있음
- 따라서 미성년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감경인자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

나. ‘집행유예의 기준’에 대한 ‘일반참작사유’ 개선 요청

- 현재 집행유예 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성범죄에서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자수’, ‘진지한 반성’ 등을 일반참작사유로 두고 있으나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
-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대상으로 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요청

다. 강간·강제추행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의 연령 분류 개선 요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강간·강제추행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을 ‘13세 미만’과 ‘13세 이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선 요망

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의 완화 해석이 가능한 양형기준 설정 요청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항거불능’ 요건으로 인하여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다시 고통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에 대한 완화 해석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달라는 요청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건의」 참조